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14. 12



BPA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 산 항 만 공 사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국제 금융위기가 진정된 2010년 이후부터 국제항만 물동량의 증가세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항만간, 특히 중국과의 물동량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항만물동량 증가세 둔화 및 국내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입 물동량 및 국내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이용이 눈앞에 도래함으로써 북동항로로 가는 마지막 대형 항만인 부산항의 중심환적항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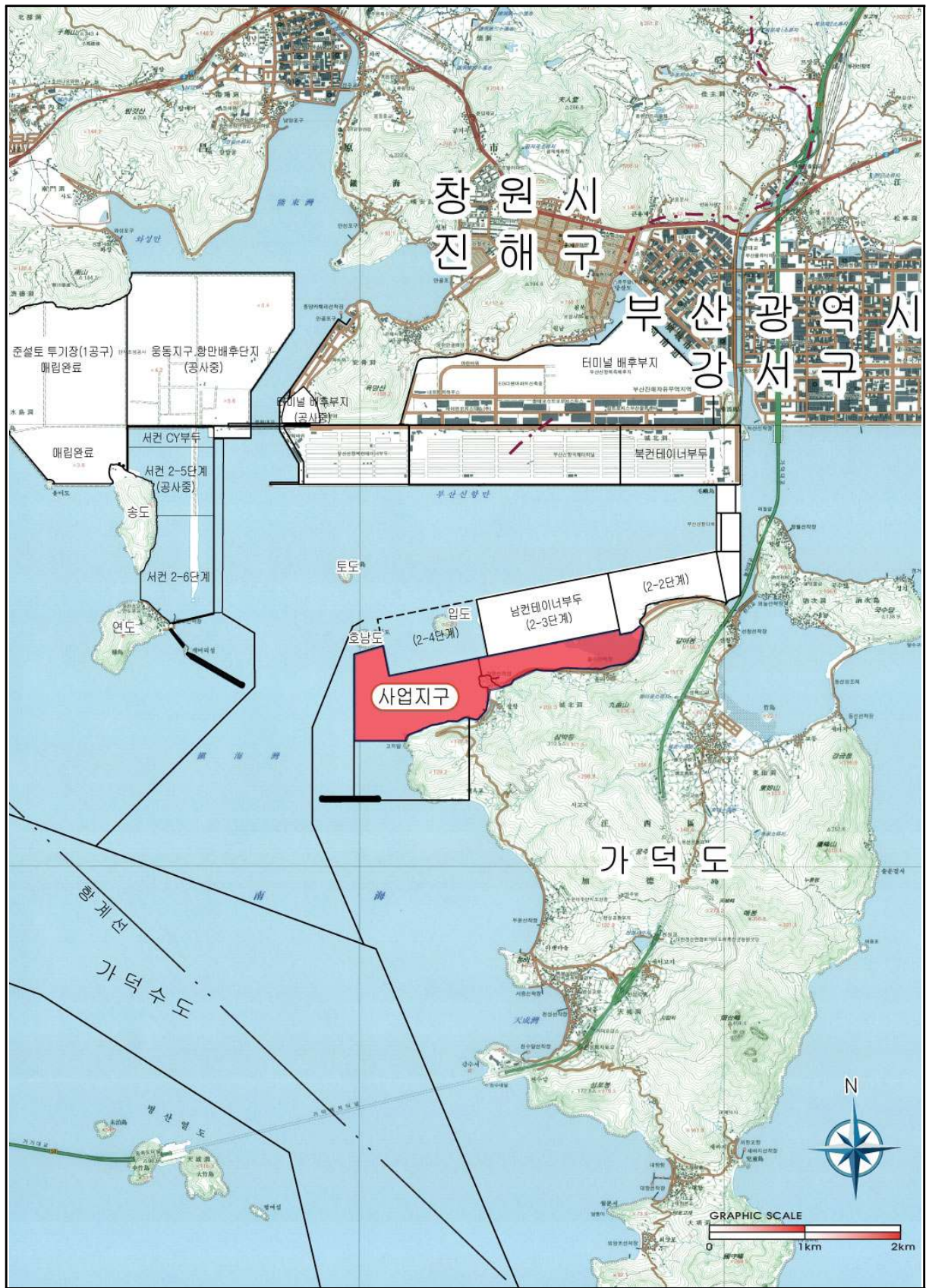
한편, 부산항 신항 배후지 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의 필요성에 따라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된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국내·외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인프라-항만배후단지-배후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항만물류·업무 중심지로 육성하여,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계를 강화한 국제 항만물류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급격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의 주도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 항만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친수·문화 공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회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만배후지(남측) 지구에 해당하며,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2013.12.31.)」 중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2.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나. 사업의 종류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항만의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BPA)

라. 승인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마. 사업지구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바. 사업의 내용

- 1) 공사기간 : 2015년 ~ 2020년
- 2) 소요공사비 : 약 4,500억원
- 3) 사업규모 : 항만배후단지(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조성 1,444,162㎡

사.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만배후지(남측)과 「항만법」에 따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 계획에 따른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각 시설용지 배치계획 수립

〈표 2-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444,162	100.0	
1. 산업유통시설용지	1,031,469	71.4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용지	876,654	60.7	
- 지원시설용지	140,671	9.7	
- 주차장 용지	14,144	1.0	2개소
2. 상업·업무시설용지	55,018	3.8	
- 상업시설 용지	55,018	3.8	
3. 공공시설 용지	357,675	24.8	
- 도 로	240,792	16.7	20개 노선
- 공 원	36,436	2.5	2개소
- 녹 지	79,344	5.5	12개소
- 오수중계펌프장	1,103	0.1	

3. 주민의견 수렴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주관행정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나. 관계행정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다. 공람 공고

○ 신문공고

- 일간신문 : 2014년 06월 05일(경향신문)
- 지역신문 : 2014년 06월 05일(부산일보)

○ 정보통신망 게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

라. 공람 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 환경관리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환경위생과, 천가동주민센터),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ortbusan.go.kr>)

마. 초안공람 기간 : 2014년 06월 05일 ~ 06월 30일(26일간)

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신문공고

일간신문(경향신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45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인의견을 수렴하고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0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북쪽 매립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BPA)
- 사업의 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 1,444,162㎡
 - 산업유형시설용지 : 1,031,469㎡
 - 상업·업무시설용지 : 55,018㎡
 - 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357,675㎡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06.05.~2014.06.30.(26일간)
-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 환경관리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환경위생과, 천가동주민센터),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

※ 본 초안보고서 전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go.kr)』에서 인터넷 공람이 가능합니다.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4.06.17(목) 14:00
- 개최장소 : 천가동주민센터 회의실
- 설명내용 :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

4.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4.06.05.~2014.07.08.
- 제출장소 : 상기 공람장소
- 제출방법 : 상기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양식으로 서면제출(우편제출가능)
- 제출의견 :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

※ 공람기간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go.kr)』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공고문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환경관리과 (051-979-5173)	사업시행자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 (051-609-6744)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주)건안엔지니어링 (02-3420-8886)
---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45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0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역도) 북측 매립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산항만공사(BPA)
- 사업의 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 1,444,162㎡
 - 산업유통시설용지 : 1,031,469㎡
 - 상업·업무시설용지 : 55,048㎡
 - 공공시설 용지(도로,공원,녹지 등) : 357,675㎡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08.05.~2014.08.30.(26일간)
-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 환경관리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환경위생과, 천가동주민센터),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
- ※ 본 초안보고서 전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서 인터넷 공람이 가능합니다.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회일시 : 2014.08.12(목) 14:00
- 개회장소 : 천가동주민센터 회의실
- 설명내용 :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

4.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4.08.05.~2014.07.08.
- 제출장소 : 상기 공람장소
- 제출방법 : 상기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양식으로 서면제출(우편제출가능)
- 제출의견 :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
- ※ 공람기간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공고문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관리과 (051-979-5173)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 (051-609-6744)	(주)건일엔지니어링 (02-3420-8885)

2) 정보통신망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J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 | [사이트맵](#) | [웹메일](#) | [뷰어다운로드](#) | [English](#) | [日本語](#) | [中國語](#)

전체

투자정보
개발계획
민원안내
홍보마당
BJFEZ소식
구역청안내
행정정보공개
취업광장

공지사항
보도자료
공고/고시
명지지구 복합용지 질의응답
입찰/수의
재정정보
법령정보
English Speech Contest
BJFEZ 홍보사진 공모전

BJ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진정한 비즈니스 동반자

BJFEZ소식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공고/고시
- 명지지구 복합용지 질의응답
- 입찰/수의
- 재정정보
- 법령정보
- English Speech Contest
- BJFEZ 홍보사진 공모전

공고/고시

홈 > BJFEZ소식 > 공고/고시

제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번호	778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작성일	2014.06.03	• 조회수	24
• 첨부	[바로보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hwp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부산신항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pdf		
	[바로보기] 주민의견제출서(0).hwp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따른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상품](#) >
[투자상담](#) >
[글목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Bright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문바로가기](#) | [사이트맵](#) | [English](#) | [中國語](#) | [日本語](#)

통합검색

전자민원
기업정보
정보공개
강서라이프
문화관광
희망강서

열린구청장실
우리구소개
청사안내
새소식
열린광장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 나는 강서!

강서구의 기본 현상을 알려드립니다.

Bright Gangseo 희망강서

MENU OPEN

- ▣ 우리구소개
- ▣ 청사안내
- ▣ 새소식
- ▣ 공지사항
- ▣ 고시공고
- ▣ 입법예고
- ▣ 입찰공고
- ▣ 보도해명
- ▣ 열린광장

공지사항

홈 > 희망강서 > 새소식 > 공지사항 > 글자크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번호	공지사항	☐ 작성자	환경위생과
☐ 작성일	2014.06.05 오전 10:37:56	☐ 조회수	18
☐ 첨부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부산신항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pdf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05일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북쪽 매립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BPA)
- 사업의 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 1,444,162㎡
 - 산업유통시설용지 : 1,031,469㎡
 - 상업･업무시설용지 : 55,018㎡
 - 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357,675㎡

어린이구청
청소년정보
여성정보
노인정보
장애인복지

☑ 구의회
☑ 보건소
☑ 강서문화원

위로

[부서별/주민자치회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바로가기](#) >

3.2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및 개최 결과

가. 주민설명회 신문 등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에 포함하여 시행
- 일 시 : 2014년 06월 12일(목) 14:00
- 장 소 : 천가동주민센터 회의실

나.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 1차 설명회
 - 일 시 : 2014년 06월 12일(목) 14:00
 - 장 소 : 천가동주민센터 회의실
 - 참석인원 : 주민 8명 참석(참석자 명부 기재 2명)



- 2차 설명회 : 1차 설명회시 주민참석 저조의 사유로 주민대표측과 사업자측의 협의하여 추가설명회(2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시행
 - 일 시 : 2014년 06월 25일(수) 15:00
 - 장 소 : 천가동주민센터 회의실
 - 참석인원 : 주민 등 30여명 참석(참석자 명부 기재 24명)



4.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4.1 의견제출 기관(주민)

의견제출 기관(자)	의견제출 여부	비 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관행정기관/승인기관)	의견제출	관련문서 사본 「제14장 부록」 참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행정기관)	의견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기관)	의견제출	
부산광역시청 (시·도지사)	의견제출	
주민의견서 제출자	1건 (천가동발전협의회)	

4.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부

가. 평가서 초안 공람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승인기관/주관행정기관)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초안 검토 의견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청	1. 총괄	○본 사업진행시 주변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반영 - 공사시 인근 주거지역에 대하여 항목별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주민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반영 -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항목별로 제시하였음.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통보하여 주기 바람.	○반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공청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주민의견 1건).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	○반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할 계획임.	

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관계행정기관)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강 서 구 청	1. 대기질	○ 동 사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 될 경우 사전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면밀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대기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 반 영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할 계획임. -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방진망, 주기적 살수계획 등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2. 소음·진 동	○ 공사 시 소음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전 과정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장비사용, 장비분산 투입 및 작업시간 조절, 피해지점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한 피해지점 별 세부 추진방안 제시가 필요함.	○ 반 영 - 공사시 소음 저감방안에 대하여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장비사용을 적극 도입토록 하며, 주거지역 인근 공사시에는 장비분산투입 및 작업시간 조절 등의 방안을 계획하였음. - 피해지점 별 세분화된 예측을 통하여 가설방음판넬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소음의 특성상 야간작업 시에는 경미한 소음도 생활환경상 침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장 작업시간 제시(야간작업 자제 등) 등 별도의 소음원 저감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동 사업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반 영 - 야간공사는 연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토록 계획하였음. - 공사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시행할 계획임.	
	3. 기 타	○ 사업시행 관련 민원발생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는 등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분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환경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사업 시행 하도록 하기 바람.	○ 반 영 - 향후 공사착공전 사후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계획임.	

3) 낙동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의 건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1. 총 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일원에 기 매퍼립이 완료된 준설토투기장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서 아래의 각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	
2.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가. 동·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종 및 서식지 모니터링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해안역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여부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영향이 예상되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 - 모니터링 시 대상 법적 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KEI, 2010) 42~46쪽 참조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에서 출현한 주요 생물종 및 서식범위 검토 • 각 대상 법적보호종, 주요 생물종 및 서식지에 대하여 생활사를 고려한 모니터링계획 수립 • 모니터링 시 조사기간, 조사지점, 조사 경로를 결과에 첨부 - 본 사업지구내에 분포하고 있는 무인도서인 입도, 토도, 호남도 등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 제330호)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었는 바, 재하성도, 북도, 부지조성 등의 공사가 장기간(2015~2020, p27)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수달의 서식지, 먹이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및 문헌자료 조사를 통하여 서식 및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법적보호종(수달)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사후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법적보호종 등의 생물종의 발견 및 폐사 등이 확인된 경우,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을 참조하여 위험등급을 판정하고 관련기관(환경청 등)에 보고하는 등의 대응방침을 강구하였음.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초안 검토 의견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나.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대기질(악취)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상 사업지역에 제조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업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대기질(악취)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입주제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으로써, 사업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입주하게 되는 업종 및 업체의 결정은 향후 공사완료 단계에서 시행되게 됨. - 상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항만배후단지내 제조업 시설은 단순 조립 가공시설이 예상되나, 일반 공장형 제조시설이 입지한다는 약조건 하에서의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 제조업 관련 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격되어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제조시설 배치불력을 결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외 점·선·면 오염원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여 모델링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오염원을 면오염원으로 처리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로 공정상 발생 가능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악취물질 포함) 발생량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TRI자료 등을 활용) • 대기(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가능한 한 최고의 저감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공장 또는 입주예정업체의 대기오염물질(악취물질, 건강영향평가물질 포함) 배출 여부, 배출시설 또는 공정, 저감시설 설치 현황, 저감시설 설치 전·후 배출량 및 배출농도, 대기질 및 악취 민원 발생 정도(발생 여부, 연 민원 발생 회수, 발생 일, 발생 내용 등)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공장형 제조시설이 입지한다는 약조건 하에서의 업종별 발생량을 이용한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 입주업체 선정시 최고효율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토록 권고토록 계획하였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상 입주업체 선정결과를 조사하고, 제조업체 선정시 공장설치계획,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 명세, 배출물 및 오염방지시설 등을 확인토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과 주거시설 사이에 완충녹지를 추가 조성(폭 20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과 인접한 사업부지내 남측경계부에 녹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거지 인접지역에 대하여 제조시설 입지를 제한토록 지구단위계획상 반영하였음.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나.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운송차량 교통량,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이동 도로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 시 대책(완충녹지 조성, 이격 거리 확보 등)을 수립(발생량 산정은 최근 환경부 자료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물류운송차량 교통량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이동 도로변 정온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에 반영하여 예측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주변 지역에 계획 중인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누적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권장하거나 입주업체 선정공고시 이를 명시토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저감대책 -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공사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기상 - 당해 사업은 제조시설 용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운영 시 대기질 및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됨(현재는 입주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평가서 내에 없음),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평가를 위한 기상자료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부지기상의 경우,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및 AWS 자료 등을 활용한 '자료동화'를 통해 기상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지구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부지기상을 측정하여 이를 검증하여야 함. 또한 생산된 기상자료는 대기확산모델링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반영 - 운영시 대기질 영향예측시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및 AWS 자료 등을 활용한 '자료동화'를 통해 기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대기확산모델링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 예상지역 현황 -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등의 현황을 이격 거리, 부지 정지 후 지형적 차폐여부, 기 확정된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등과 함께 표 또는 그림으로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주거지역 현황을 제시하였음. - 매립지에 대한 배후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형적 차폐영향 등의 발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 현황 조사 - 대기질 현황 조사 결과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서의 납(Pb) 및 벤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이번 사업으로 그 영향이 가중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인근 지역에서 자동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최근 1년 측정 자료를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3차 조사결과 및 기존 문헌조사 자료를 통하여 납(Pb) 및 벤젠 농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인근 지역 자동측정망 자료에는 납(Pb) 및 벤젠 조사가 없음.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나.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및 악취 영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서로 그 내용을 정리(업종별·오염물질별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방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방안, 물질별 목표저감효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포함)하는 관리방안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다.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계획에 따르면 장치형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바(305쪽),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용량 및 처리속도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장치형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에 대한 용량, 처리속도, 시설계획 등을 제시하였음. 	
	라. 해양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호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친수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움. 진정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생태계와 연계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특히 본 배후단지는 이전에 암반조건대로 구성된 자연해안지역이었음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서측과 남측해안을 대상으로 해조류 또는 부착생물이 실질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생태호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생태호안 조성 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사업인 준설투기장 호안조성 공사시 조성된 인공 및 생태호안 조성 현황을 제시하였음. - 준설투기장 인공호안 및 인근 자연암반에 서식하는 해조류 및 부착생물을 서식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누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정지 인근 해역에는 다양한 연안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부산항 신항 항로준설공사가 계획 중에 있는 등, 부산항 신항 관련 다수의 사업이 현재 개발·추진 중에 있으므로 상기 사업들과의 상호관계,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누적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특성상 강우시 토사유출 외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며, 발생량 또한 주변 사업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 강우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계획하였음.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마.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에서는 도시 생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획차원의 수단으로 환경계획지표로서 생태면적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1)을 참조하여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관련 계획 및 규정 등에 따른 최소생태면적률을 산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현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일부구역이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160,000㎡, 11.1%)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 사유를 제시하고 동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여부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 지형도면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현재 대상지역은 미지정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제시하였음. 	
	바.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제조시설용지(349쪽)에 정비고 및 제조시설이 배치 될 경우 토양오염 유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인지 확인하고 그러할 경우, 토양오염물질 적정 관리 및 처리 여부를 명시하고, 주변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분기별 1회, 대상항목 : 토양오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 유발물질 취급시설 여부 및 취급시설 도입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사. 지형· 지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약지반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약점성토층의 분포 심도가 최대 50m에 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수십 m이상(p.378)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약지반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추조사 결과를 정밀분석 및 활용하여 연약지반의 판단 및 정확한 침하량 등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약지반분포 현황 및 침하량 등 연약지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토 및 사토 처리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업 부지조성 및 지반안정화를 위하여 시기별 부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바, 부족토 수급 방안 및 발생사토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 등 재료 공급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발생 사토는 우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토록 계획하되, 사토 발생시기에 인근 신항내 건설사업장에 유용할 계획임.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 등의 운영 시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물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 • 업종별로 가용한 가장 최근(2011~2012년)의 세부 품목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처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예측 • 가용한 가장 최근 기간의 2개 이상 통계자료에서 업종별 세부 품목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가 과다하게 차이 날 경우에 한해서 해당 품목의 폐기물 원단위를 보정(업종별 폐기물 발생 평균증가율 적용 등)하는 방안 검토 • 발생량 산정 과정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특성상 제조시설 업체수나 업종 등은 공사완료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의 발생량 예측은 불가능함. - 시설별 폐기물 발생량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만 최신 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활동인구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사업에는 약 90만㎡의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대상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4) 부산광역시청(시·도지사)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부산 광역시	1. 총 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국가 환경평가대상사업으로 사업승인기관에서 인가 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내용을 우리시(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 후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시행할 계획임. 	
	2.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지반개량을 위한 표층처리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층처리토양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층처리 공법은 장비진입을 위하여 투기장 표층에 대나무네트 및 분리매트를 포설하는 공법으로 토사 발생은 없음. 	
	3. 지 형 지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는 준설토매립지역임으로 공사시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며, 지반침하여부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개량공법에 대한 시공중계측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부산 광역시	4. 동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 훼손이 예측되는 수목 중 양호한 수목은 사업장 주변에 이식, 식재하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 나무장터를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등 「(지침)산림자원활용을 위한 도로 등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개선계획」에 의거 자원화하는 방안 제시 필요하고, 환경부 생태면적율 적용 지침을 참조하여 항만배후단지 조성시 주변 산림과 연계한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는 대부분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구간에 대한 지반개량이 예정된 바, 가이식장 확보가 불가능하며, 나무장터는 현재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사업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소생태면적률을 산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인근 도서지역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어 사업시행시 수달의 서식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바, 수달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조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상 수달 서식 모니터링을 반영하였음. 	
	5.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해양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인 바 해양에 부유토사 확산 방지막 설치, 공사강도 조정 등을 통하여 부유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토사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침사지 설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6.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수급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와 LED 조명 설치 계획 수립 필요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계획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통해 최대한 개발이전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 배후물류단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권장하거나 입주업체 선정 공고시 이를 명시토록 계획하였음. - 도로변 가로등에 대하여 LED 조명설비를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2012.01.02.개정)」에 의거, 향후 건축물 조성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은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입주업체 선정공고시 해당내용을 공지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미평가 시행을 방지토록 하겠음. 	

5) 주민의견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사 단 법 인 천가동 발 전 협의회	1. 대기질 소 음· 진 동	<p>〈 육상부문 피해에 대한 주민의견 〉</p> <p>I. 예상되는 피해 범위</p> <p>1. 대기오염</p> <p>①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매연,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주거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p> <p>②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주거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p> <p>③ 항만배후단지 운영 및 교통량 증가에 대한 공해발생</p> <p>2.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p> <p>①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함을 보장받을 국민의 기본권조차 방해받는 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의 발생 우려가 높음</p> <p>3. 기 타</p> <p>① 공사시 먼지, 소음방지를 위한 방호펜스 설치로 인하여 경사지대에 위치한 마을 주택의 필수적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명확히 예상됨.</p> <p>② 기타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 우려</p> <p>II. 피해방지를 위한 주민의 요구사항</p> <p>1. [방안 1] 율리마을 및 장항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 보상</p> <p>① 토지 및 건축물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수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고)</p> <p>② 주변 경작용 농경지에 대한 공사기간 동안의 농업손실 보상</p> <p>2. [방안 2] 방안1-①이 불가시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 이주를 위한 최소 자금제공</p> <p>① 공사기간동안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월세 자금보상</p> <p>② 공사기간 전 일시이주 및 공사완료 후 재이주를 위한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등 지급보상</p> <p>③ 방안1-② 농업손실보상</p>	<p>-</p> <p>○미반영 - 토지 및 건축물,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임.</p> <p>○미반영 - 공사기간동안 일시 이주를 위한 자금제공은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임.</p>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사 단 법 인 천가동 발 전 협의회	1. 대기질 소 음· 진 동	<p>〈 육상부문 피해에 대한 주민의견 〉</p> <p>3. [방안 3] 소음,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설치</p> <p>① 공사구역과 주거지대의 고도차이, 바람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방호펜스를 높이 설치하되, 울리마을과 장항마을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이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연속적으로 넓게 방호펜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p> <p>② 방호펜스 설치시에도 공사구역 방향으로 경사면이 위치한 마을내 주택의 조망권피해(※ 일반적으로 주택, 아파트 등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금전적으로 피해액을 인정하는 법원의 추세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p> <p>4. [방안 4]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적시적재의 피해구제</p> <p>- 기타 수치상으로 예견된 각종 피해인자의 발생범위를 넘어 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한도의 피해 발생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두길 요청함.</p>	<p>○반 영</p> <p>- 공사시 소음 및 미세먼지 영향 저감을 위하여 마을 전면지역에는 가설방음판넬+방진망을, 마을간 사이에는 경계펜스+방진망을 연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하였음.</p> <p>- 가설방음판넬 규모 및 주거시설 위치를 고려할 때, 조망권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음.</p> <p>○반 영</p> <p>- 공사착공전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시 예측치 못한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임.</p>	
	2. 수질	<p>〈 해상부문 피해에 대한 주민의견 〉</p> <p>I. 예상되는 피해 범위</p> <p>1. 공사중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오염</p> <p>2. 공사중 발생 오·폐수 및 공해물질의 해양유입에 따른 오염</p> <p>3. 항만배후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의 해양유입에 따른 오염</p> <p>II. 피해방지를 위한 주민의 요구사항</p> <p>1. 환경영향평가서에 토사유출 및 오·폐수 등 공해물질의 해양유입방지를 위한 배후수로, 침사지의 규모·처리능력의 적시를 바람.</p> <p>2. 오탃방지막 설치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오탃방지막 설치 규모를 적시 바람.</p>	<p>-</p> <p>○반 영</p> <p>-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오탃방지막, 임시침사지)의 규모 및 처리능력을 제시하였음.</p> <p>○반 영</p> <p>- 공사시 및 운영시 오·폐수처리 계획을 제시하였음.</p>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사 단 법 인 천가동 발 전 협의회	2. 수 질	<p>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처리능력, 효과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 바람</p> <p>4. 상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토사유출 및 오·폐수 등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량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 바람.</p> <p>5.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주민대표에게 이를 통지하고 주민대표의 입회하에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p> <p>6.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조성공사 및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수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토록 함.</p> <p>7. 불측의 어업피해발생을 대비한 사전 대비책의 강구 및 어민피해보상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함.</p> <p>8. 항만배후단지 운영 이후 운영으로 인한 해양오염 여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함.</p>	<p>○반 영 - 장치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 및 처리능력, 효과 등을 제시하였음.</p> <p>○반 영 - 정성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검토하였음,</p> <p>○미반영 - 본 사업에 의한 수질관련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저감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어 미반영하였음.</p> <p>○미반영 - 본 사업은 어업피해영향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p> <p>○반 영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예측치 못한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법령인 「수산업법」에 따른 조사 및 보상절차를 시행할 계획임.</p> <p>○반 영 - 운영시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의 적정운영여부, 오·폐수 처리계획 등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나.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자 (기관)	평 가 항 목	초 안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주 민 설명회 의 건 사 항	1. 대기질	○ 비산먼지 영향예측 범위를 놀차동 및 동선동 지역까지 확대하여 예측	○ 반 영 - 비산먼지 영향예측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3차 현황조사시 놀차동 지역 1개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대기질 예측을 실시하였음.	
	2. 기 타	○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하고 난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질 수 없으니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함.	○ 반 영 - 공사시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토토록 계획하였음.	
	3. 소음·진 동	○ 장항·울리마을 앞에 방진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소음 및 먼지가 안난다는 것은 말도 안됨	○ 반 영 - 예측 시행시 악조건에서 예측을 시행하므로, 예측결과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사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영향예측의 오류 또는 부적정 발견시 그에 대한 적절한 추가대책을 수립할 것임.	

주) 단순질의, 보상 내용과 주민의견서 등 유사의견 제외